

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연번부여 세부기준 공고

수원시 주택재개발·재건축 정비사업 ‘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’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제출될 동의서에 연번부여 및 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공정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번부여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25일

수 원 시 장

1. 동의서 연번부여 업무처리 기준

가. 연번부여 시기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5조(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) 제1항에 따라 수원시 주택재개발·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(서식1)를 제출한 경우 교부

나. 신청자격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(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·승인) 제2항의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

다. 신청서류

-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(서식1) 1부
-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
-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부
-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자료 각 1부.
 -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증빙 자료 (추진위원 정정 회의 개최, 모집 공고 등)
 -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
(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음)

- 추진위원회 구성 후 가칭)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, 감사 선정 (부위원장은 필수 사항 아님)
- 추진위원 자격 증빙서류 (위원장, 감사 등, 구역 내 소유 증빙, 거주사실 증빙 서류 등)
-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(연번을 기재한 후 인쇄하여 제출)
 - *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

2. 동의서 작성요령

가. 동의서 작성방식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
-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내용 중 “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 범위” 란에는 다음 내용을 아래 표기방법에 따라 기재
 - ① 발급연번(수량은 연번부여 요청 매수)
 - * 동의서 신청매수(토지등 소유자수의 120% 이내)
 - ② 수원시에서 검인 도장을 날인하여 발급
-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내용 중 “연번” 란에는 발급연번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연번/최종연번을 인쇄하여 구성동의서 연번부여 신청
- 동의자의 날인이 되는 동의서 첫 장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, 감사 및 부위원장 (해당 시)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(별지 작성 불허)
- 여러 장의 동의서는 반드시 전체쪽수가 포함된 쪽 번호를 하단에 인쇄

나. 동의서 유효확인

- 연번범위 등 동의서 양식 확정 후 업무담당자가 내용을 확인
- 정비사업 조합설립위원회 구성동의서 작성 시 인적 사항, 소유권 현황 등 정확한 내용 기재(오기 시 무효처리).
- 구성동의서 발급 시 「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연번부여 발급대장」 (서식 3)을 작성하고 수령자 서명 날인.
- 연번부여 동의서를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그 사유와 연번을 기재하여 동일양식을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도장 날인 후 동의서 발급대장에 신청자, 부여연번, 발급사유, 서명(날인) 등 필요사항을 기재 후 재발급.

- ※ 구성동의서 연번부여 신청 시 기재되는 구역명칭은 신청 전 수원시와 협의하여 결정
- ※ 동의서 징구 중 추진위원 변경(추진위원의 해임, 사퇴, 유고, 교체 및 자격상실 등) 시

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존의 동의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, 반드시 추진위원회 구성 사항이 변경된 동의서를 재발급 받아 징구하여야 함. (기존 동의서 사용 시 무효처리)

- 붙임**
1.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1부.
 2.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1부.
 3.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연번부여 (재)발급대장 1부.
 4.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. 끝.

소관부서	도시정비과	담당자 직.성명	주무관 손대경	전화번호	031-5191-2397
-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